외화(USD)로 중장비 구입시 환율

Q

폐사는 국내 법인과 매매약정을 맺고 중국산 중장비를 구입예정(인코텀즈 DDP조건)입니다.
이때 대금은 USD로 지급합니다. 계약시 30%, 중도금(선적시) 50%, 잔금(인도후) 20%
계약금 30%는 선물환계약 후 지급하며, 중도금/잔금은 수금한 USD로 지급예정입니다.
이때 각각 USD환율은 어떻게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요?
선물약정환율? 지급일 매매기준율? 수금일 매매기준율?
지급일자의 매매기준율일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세율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요?

A

1. 법령에 의해 차량과 별도로 구매하는 채권(공채)는 차량의 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단순 대행사는 공급자가 아니고 실제의 공급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국내 법인간 국내에서 외화로 거래하는 경우 영세율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되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공시하는 공시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우수사원 포상 금액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됨

Q

당사 복리후생 제도 중 분기별 1명씩 우수사원을 선발하여 포상으로 제주도 항공권과 호텔 숙박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숙박비는 회사에서 직접 예약(약정된 호텔)하고 항공권은 개인이 선결제 시 개인에게 송금 또는 회사에서 항공권 직접 예약)
이럴 경우 항공권과 숙박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맞나요?

A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내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연말정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지급명세 제출 문의

Q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 지급면세서 제출관련 문의입니다.

작년 3월 정년이 되어 퇴사한 직원을 3월부터 일용직으로 다시 채용하였습니다. 단기간 근로를 목적으로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현재까지도 계속 근로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시 상용직으로 변경하여 근로소득 신고하여야 했으나, 계속 일용직으로 소득신고하였습니다.(3월부터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하였음)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국세청 문의시 일용직 지급조서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필요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 제출시 포함되어야하는지?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을 계속 일용직 지급명세로 신고했을 경우 발생되는 세무상의 문제(가산세 등)는 없는지?

A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일용직으로 소득신고하였다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되므로, 3월10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일용직을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가산세 등의 문제는 없으나 4대보험은 일반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가입해야 합니다.

공장 건축물 내 보일러 교체에 대한 자본적지출 처리

Q

공장 건축물 내의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신규 보일러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개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세 납부 및 자산으로 처리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건축물의 상각에 포함시켜서 감가상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비품 등으로 보고 별도의 상각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수선비에 대해서는 자본적지출로 처리가 가능하며, 또한 귀사의 의견대로 별도의 개별자산으로 반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품으로 반영하고 별도로 상각해도 됩니다.